



확인서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청 대상 근로자의 인건비를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 
(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) 지원금 명칭: \_\_\_\_\_
-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부터 정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
-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연도의 60세 이상 피보험자수 월평균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입니다.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「중견기업법」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단, 사회적기업은 대기업 포함)
-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4대사회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업종이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업종(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주점업,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, 무도장운영업)에 해당하는 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의 승인, 불승인 및 지원액은 「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(고용노동부 고시)」과 지침에 따라 심사합니다.
- 「고용보험법」 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, 부정수급(반환, 지급제한, 추가징수 등)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 사업주: (직인)

작성방법

- 1) 사업장 항목
  - 사업장관리번호: 4대사회보험공단에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 작성
  - 주소, 전화및 FAX 번호, 이메일주소: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(또는 방문)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할 수 있도록 작성
- 2) 계속고용제도 개요
  - 계속고용제도: 계속고용제도란 ①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, ②기존 정년을 폐지하거나, ③기존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를 말함
  - 제도 도입(취업규칙 변경 등) 신고일: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한 규정(취업규칙 등)을 노동관서에 신고한 날 또는 기업 홈페이지·전자메일·인터넷 메신저 등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
  - 계속고용제도 시행일: 취업규칙(또는 단체협약, 인사규정, 운영규정 등)에 명시된 계속고용제도 시행이 시작된 일자
  - 제도 도입전 정년: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취업규칙(또는 단체협약, 인사규정, 운영규정 등)에 명시된 정년
  - 제도 도입후 정년: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취업규칙(또는 단체협약, 인사규정, 운영규정 등)에 명시된 정년
- 3) 신청대상 근로자 자격 항목 : 각 항목별로 예, 아니오에 v 표시
- 4)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명부
  - ① 제도 유형: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제도 유형에 체크
  - ② 제도 변경전 정년 도달일: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취업규칙(또는 단체협약, 인사규정 등)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한 일자 (예시) 정년을 60세 → 61세로 연장한 경우, 60세인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자를 기재
  - ③ 제도 변경후 정년 도달일: 변경된 정년 도달일(정년 연장형 근로자만 기재) (예시) 정년을 60세 → 61세로 연장한 경우, 61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자를 기재
  - ④ 재고용 근로계약기간: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재고용 시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기재(재고용형 근로자만 기재)
  - ⑤ 마지막 근무일: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분기에 퇴직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자를 작성
- 5) 지급계좌 : 예금주가 “사업주 또는 상호명(법인명)” 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번호 작성

처리절차

